「2024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4. 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목 차

Ⅰ. 용역 개요 ····· 1

Ⅱ. 용역 내용 ····· 2

Ⅲ. 연구성과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4

Ⅳ.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 5

1. 참가 자격 ····· 5

2.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 5

3. 평가기준 ····· 7

Ⅴ. 제안서 작성 기준 ····· 9

1. 제안서 제출 방법 ····· 9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9

Ⅵ. 용역수행의 일반사항 ····· 12

Ⅶ. 용역수행의 보안사항 ····· 13

[별지 서식] ····· 16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4년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미래포럼 운영 용역

2.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4. 12. 20.

3. 용역금액 : 1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용역 추진배경

○ 자율주행차 상용화·확산에 필요한 제도, 기술, 산업, 생활 분야 등 핵심이슈 논의를 위해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발족(’16.6)

* 국토부2차관·민간 공동위원장, 7개 정부부처 및 60여개 기관의 약 110명 전문가 참여

- 발족 이후, 자율주행차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관계부처 등 논의 및 심층연구를 통해 공론화하여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정부 정책 제안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한 활동보고서 발간(6회)

○ 미래포럼 발족 8년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자율주행차 정책개발 및 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현장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대안마련 등이 가능하도록 포럼 운영

5. 용역범위

1) 시간적 범위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주요 자료는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

2) 내용적 범위

ㅇ 자율주행차 정책개발을 위한 심층연구 및 전문가 간담회

- 자율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심층연구 실시

- 자율주행차 주요 현안이슈 도출을 위한 분과별 간담회 개최

ㅇ 자율주행차 정부 정책 제안 및 성과 공유

- 수용성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인식조사 시행 및 이슈브리프 발간

- 민・관・연 자율주행 오픈포럼 및 성과발표회 개최

Ⅱ. 용역 내용

1. 정책개발 심층연구 시행

ㅇ 각 분과별 자율주행차 현안이슈 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제도, 기술, 사회, 산업 분과 운영(분기당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 국내외 최신 기술, 정책, 제도 동향 등 소개・논의(수시)

ㅇ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정책개발 관련 주제 선정하여 심층연구 시행(2건 이상, 필요시 변경 가능)

- 모빌리티혁신로드맵('22년),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21년) 등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주제 선정

- 주제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정책개선 방안 도출

* 필요시 심층연구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소액 단기 연구용역(1건) 추진 가능

2. 자율주행차 정부 정책 제안 및 성과 공유

ㅇ 국민 수용성 제고, 정책방향 논의 등을 위한 성과발표회 개최

(1회 이상, 필요시 변동 가능)

○ 민·관·연 의견 교류를 통해 애로사항 발굴, 규제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자율주행 오픈포럼 개최(1회 이상, 필요시 변동 가능)

○ 수용성 향상을 위한 자율주행 인식조사 시행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이슈브리프 발간(연 1회 이상, 필요시 변경 가능)

3. 선제적 이슈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국내외 최신기술, 정책, 제도 동향 논의를 통해 자율주행 현안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분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4개 분과 X 연 3회(필요시 조정 가능), 전문가 간담회 개최 후 활동집 발간

4. 공정계획

세부추진내용	비중	전 체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12.20
1. 자율주행차 정책개발 심층연구 시행	61	3	3	6	6	7	7	7	7	6	6	3
- 전문가 간담회 개최	33	3	3	3	3	3	3	3	3	3	3	3
- 정책개발 심층연구 시행	28			3	3	4	4	4	4	3	3	
2. 자율주행차 정부 정책 제안 및 성과 공유	39			2	4	5	5	5	5	5	5	3
-오픈포럼 · 발표회 개최	18				2	2	2	3	3	3	3	
- 인식조사 시행 및 이슈브리프 발간	21			2	2	3	3	2	2	2	2	3
공정률	계	3	3	8	10	12	12	12	12	11	11	6
	누계	3	6	14	24	36	48	60	72	83	94	100

※ 용역 진행상황 및 발주처 요청 등에 따라 공정계획은 변경 가능

Ⅲ. 연구 성과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고
최종보고서 이슈브리프 USB 1식(최종)	용역 준공 시 발간 시(1회) 용역 준공 시	10부 각10부 1EA	

2. 보고서 작성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 표지,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배부 시행

Ⅳ.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1.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비영리 단체도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최소 지분율 10%이상)

2.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선정절차

○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우선협상 대상) 후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ㅇ 종합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제안서 기술평가

-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기술평가표 참고

ㅇ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기타 참고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3. 평가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관평가 (15)	연구인력	- 연구인력 보유수	15	계량평가
용역수행 부 분 (85)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30	비계량 평가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5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연구조직 구 성	-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15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5점)	20	
	기 타	-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보안대책 등	10	
계			100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연구인력 보유수(15점)

구 분	9인 이상	8인	7인	6인이하
점 수	15	13.5	12	11.5

-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율주행차 및 자동차안전, 정책, 교통 등과 관련된 전공 석사·박사 및 연구원 등 연구·전문인력 보유 수

(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85점)

ㅇ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등(30점)

ㅇ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15점)

ㅇ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등(10점)

ㅇ 책임연구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20점)

- 자율주행 및 자동차 관련 기술, 정부정책지원, 안전기준 등 자율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 평가

ㅇ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등(10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점 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 유의사항

- 점수는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
- 공동도급 시 계량평가는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ㅇ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나. 입찰가격 평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Ⅴ.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접 수 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ㅇ 담당과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1-4145

마.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1) 제안서 8부 및 제안요약서 8부, CD 2매(조달청 제출분 1매포함)

2)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서류 별첨)로 하며 한글(hwp)로 작성하며 좌철을 원칙으로 함(단,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음)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온라인(전자) 제출(나라장터)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제출된 자료 중 일부

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 불가)

-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ㅇ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ㅇ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다. 특수조건

-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가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별첨>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 1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서식 - 2
Ⅲ. 사업 수행부문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기술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등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용역 수행전략 등 기술	
4. 연구 추진체계	용역수행 체계를 순서도로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계획	연구 추진일정 등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 3
2.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정기보고, 수시보고 등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Ⅵ. 기타	보안관리대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Ⅵ. 용역수행의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 세부내용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용역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용역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보고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착수보고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 시 제출한 예정 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용역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용역수행 중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심층연구 시행 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별도의 조사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 작업, 개선대안 설정 및 설계 등 용역 수행 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용역의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라. 기타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Ⅶ. 용역수행의 보안사항

○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에 종사하는 자(대표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별지 제16호서식)를 징구하여 용역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미리 알려야 하며 추가로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용역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 · 관리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용역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용역내용 중 일부를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비밀 및 대외비를 생산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해서는 안 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불량품 등의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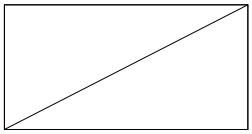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2024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용역

업체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요약)			
8. 상시 종업원 수			
9.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평 균
1. 총자본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액					
8.자기자본 비율 $\left(\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right)$					
9.유동자산 비율 $\left(\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right)$					

[별지 제5호 서식]

본 용역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부분
책 임 연구원						연구 총괄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공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사항			
본 용역 참여임무				참여율			
주 요 경 력							
용역명 (또는 논문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연락처)		

주 1.[제4호 서식]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본 용역 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용역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용역 제안서 편철 순서

1. 제안서 표지 [별지 제1호]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경영실태 [별지 제2, 3호]

3. 참여인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 [별지 제5, 6호]

4. 기타 증빙자료 등

5. 제안서 내용(A4용지 30페이지 이내, '한글' 활용)